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정책 발전방안

문아람<sup>1</sup>, 이윤환<sup>2\*</sup>

<sup>1</sup>건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sup>2</sup>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Development Pla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of Low Income Group

Aram Moon<sup>1</sup>, Youn Hwan Lee<sup>2\*</sup>

<sup>1</sup>Doctor cours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 Y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Military Defense & Police Administration, Kon Yang University

요 약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어 : 교육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헤드스타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management state of three education welfare policies such as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gram, Dream Start and after school program, the main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education welfare policy. The study examines the advanced research and uses literature review to meet the purpose. The study draws the problem of each program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First, the related projects run separately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be rearranged into an integrated system in order to control comprehensively and together. Second,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expertise personnel in charge and increas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private personnel. Third, the authorities should raise the awareness on education and welfare through the connection and the discussion between each institution and the experts. Fourth, a new service model should be invented.

**Key Words** : Education Welfar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Dream Start, After School Services, Head start, eaz

### 1. 서론

전통적으로 교육은 거의 유일하고 확실하게 사회계층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이 오히려 사회계층의 세습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세대 간 계급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물리적 자본승계를 통한 계급 세습 정도는 크게 줄

\*Corresponding Author : Youn hwan Lee(lyh@konyang.ac.kr)

Received January 4,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26,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고 교육을 매개로 하여 부모의 계급 지위가 자녀의 계급 지위로 이어지는 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가족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친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에 영향을 주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누적된 가족소득의 영향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부와 빈곤의 세습’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중산층 몰락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더욱 심화 되었고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대응이 시작 된 때이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취학 전 유아교육비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방과후 학교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의 지자체에서만 시행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을 제외한 전국 단위(전국 시·군·구, 전국 단위학교) 시행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교육우선지역(EAZ)를 모델로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으로 아동·청소년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를 모델로 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취학 전부터 개입함으로써 소외현상을 일찍 차단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사업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복지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세 가지의 교육복지사업은 그동안 꾸준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외형적으로는 모양새를 모두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이 정책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정책의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재구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가지의 사업 모두 10여년을 지나온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들 사업은 운영 체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별개의 사업이기는 하나 각 사업이 모두 유사한 목표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모두 질 높은 삶을 향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개별적인 분석과 함께 이들 모두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각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상호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의 그동안의 운영 현황 파악과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복지사업이 본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시도 되었지만 여전히 학계 및 교육복지 현장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교육복지에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 사이에서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과 관련된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데 있어서 그 원칙과 절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복지의 목표·내용·대상 등에 관한 견해들은 상충하기 마련이며, 특

히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논의 수준에서는 계급(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3].

이렇듯 교육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과 복지를 어떤 관계로 보는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략 세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복지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교육을 사회복지에 속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이 경우 교육복지는 그 자체가 사회복지 활동-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은-이며,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수단적 기능을 가진다[4]. 세 번째 견해는 교육을 사회복지의 한 구성요소로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보아 사회복지적 방법을 통한 교육지원 활동을 교육복지로 보는 관점이 있다[5].

홍봉선[6]은 교육복지를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교육복지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 충족 및 교육기회, 과정, 결과의 불평등 해소를 통한 인간을 육성하는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교육복지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지속된 논쟁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교육복지를 최소한의 절대적인 수준의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가, 혹은 상대적인 격차의 해소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김용일[7]은 교육복지를 오로지 교육소외자에 한정되는 시혜적 지원활동으로 바라보는 선별적 접근을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접근의 기초 위에 선별적 접근을 배합하는 방식을 이루어지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미래의 교육복지 개념 정립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류방관[8]은 '교육복지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불평등이나 격차로 인한 교육소외에 대해서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해결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2 외국의 교육복지정책 검토

### 2.2.1 영국 (EAZ와 EiC)

194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44)에 의해 영국에 교

육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 영국은 산업화와 세계대전으로 사회의 빈부격차, 소외와 불평등이 악화되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산업현장으로 내몰리고 기초교육보장이 절실해짐에 따라 학령기의 전 아동이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는 대신 의무적으로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국의 교육복지의 시초였다[9].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에 있어 '제 3의 길'을 제시하였다. '제 3의길'에 따르면 복지국가가는 소득의 지속성을 위한 급여보다는 인간자본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 기간 설비를 증대시켜 국민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의존이 아닌 자립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0]. 이러한 노선이 시사하는 대표적인 복지 분야가 바로 교육복지우선정책이다.

'1988년 교육개혁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었다. 학부모의 선택권은 필연적으로 '선호'와 '비선호'학교를 갈라놓게 되었고 빈약한 가정의 자녀들은 비선호 학교에 정제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의 재정수입 감소는 학생의 학력 저하 등 교육환경 열악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에서 자력으로는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안의 고조로 1998년 교육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chapter III)을 통해 최초로 교육 특구의 법정지위와 의무가 명시되었다.

EAZ정책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높은 결석률, 낮은 학업성취도, 빈곤가정의 증가 등 지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지역교육청, 민간기업 등이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xcellence in Cities(EiC)는 EAZ를 확장하여 도심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한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극복을 위해 학교 내외에서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학습멘토프로그램(Learning Mentors),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단기 교육을 제공하여 정학이나 퇴학의 조치를 최소화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Learning Support Units), 중등학교의 설치된 ICT 관련 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City Learning Centers), 영재학생들에게 최대의 잠재능력을 도출하도록 재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Gifted and Talented Schools)등이 있다[11]. 교육부

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1999년 빈곤 아동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 초기부터 교육불평등을 방지하여 성장과정에서의 격차 및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슈어 스타트(Sure Start)사업을 통해 3세부터 청소년까지 놀이교육, 상담, 보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 전역에 슈어 스타트 어린이 센터를 설립하여 이와 관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기능 확대 정책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 2.2.2 미국(헤드스타트와 아동낙오방지법)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육복지법제를 정비하고 교육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1965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헤드 스타트는 주로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정규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동의 학습, 신체,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괄적 의미의 취학 전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현재에는 서비스 대상 연령을 0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임신부에 대한 출산 전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헤드 스타트의 중심 사업의 내용은 첫째, 개별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민자 자녀와 원주민 출신 자녀를 위한 지원 등 지역적 조건은 물론 인종과 문화적 성격에 부합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아동들의 건강상의 조기진단을 강조하는데 아동들은 건강검진과 구강검사, 예방접종 뿐 아니라 장애요인을 조기 진단 받는다. 셋째,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동의 부모에 대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및 감독,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넷째, 서비스를 제공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들을 파악한 후 이에 부합되는 공적부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12].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균이 현저히 낮아지자 부시 행정부에서는 1965년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개정을 단행하여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시행 하였다. 이는 일반 교육 과정에서 낙

오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각 주에서 정한 성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교와 교사, 학생이 제재를 받는 법이다.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적절한 향상도를 보이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그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시험 결과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는 실패누적년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떨어지고 학력격차가 줄지 않자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아동낙오방지법은 네가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첫째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정부와 교육구는 연간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학생들은 읽기 및 수학과목에 대해 성취도를 측정하여 보상 및 제재를 받게 된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주정부가 설정한 학업성취도에 미달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전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받고 학업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의 취약계층에게는 개인교습과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자율성과 유연성이다. 아동낙오방지법은 교육결과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원금의 50%까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검증된 효과성 있는 교육방법을 강조한다. 교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정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13].

### 2.2.3 프랑스 교육우선지역(ZEP, REP)

프랑스는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을 내세우며 모든 불평등에 대항한다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교육기회평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교육복지정책을 실행해왔다.

프랑스 교육에서는 1989년 교육방향법(Framework Act of Education)가 제정된 이후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10]. 교육방향법은 기회평등에 방점을 찍은 법으로 국가는 교육을 최고 우선순위로 하며 국가교육은 기회평등에 기인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교육우선지역(Zone d'éducation prioritaire: ZEP)은 1981년 사회당 집권 후 미테랑 정부가 기존의 교육정책

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력차별을 양산하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킨다는 인식으로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는 슬로건 아래 긍정적 차별에 기초하여 실시한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이 되는 소외계층 대상 교육정책이다.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교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불평등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활동계약을 맺은 교육지도사 등이 저소득층 조기학습, 학업중단 예방, 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보충지도 등의 교육을 하며 학교 시설 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REP(Reseaux d'Éducatons Prioritaires)는 1995년 시라크 정부 이후 도시근교에는 교육소외계층이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에는 학생 수 자체가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교육우선지역이 넓은 경우에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로 인해 ZEP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교육우선연계망 제도로 전환되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ZEP를 REP으로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고등교육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14].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불평등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활동계약을 맺은 교육지도사 등이 저소득층 조기학습, 학업중단 예방, 방과 후 활동, 스포츠 활동, 보충지도 등의 교육을 하며 학교 시설 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교육복지 현황 및 문제점

#### 3.1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전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교육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문민정부 때로 볼 수 있다. 1995년 김영삼정부의 ‘신교육체제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15]. 하지만 본격적으로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의 증가와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교육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만 5세아 무상교육실시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국민의 정부 말기 교육소외집단 혹은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을 망라한 교육복지 정책을 구안 하면서 부터이다[16].

참여정부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복지 종합계획(2004-2009)’에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해소,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등 3대 정책목표 아래 종합적인 교육복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17].

이 시기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으로는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만 3-4세 유아교육비지원, 중학교 무상교육 지원, 저소득 학생 대상 정부장학금 지급, 대안학교 법제화 등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목표로 교육복지정책이 지속되었다. 2008년 교육부 보도자료(12.7)에 의하면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배경을 밝힌 후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총 5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2008), 장애학생 무상·의무 교육 실시(200),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2008),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법제화(2011) 등을 들 수 있다.

#### 3.2 주요 교육복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3.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 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의 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3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전국의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특별교부금사업에서 보통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되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8].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문화·심리정서·복지·지원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단위 프로그램 등 지역기반형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Table 1. Service Category & Contents example.

division	objective	Key program
Learning	·Basic learning improvement ·Self learning improvement ·Formation of vision	·Small-group basic learning ·Learning mentoring ·Custom form Self learning ·Career education
culture experience	·Cognitive ability Improvement through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experience, watching a play with Curriculum
trial emotion	·Emotional development ·Psychological stability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Ego growth program
welfare	·Healthy physical development ·Crisis situation solving ·Supplementation of Family function	·Health promotion program ·Crisis Intervention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support	·Recovery of school community ·Community Recovery	·Thank events,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Community Network ·Sharing Activities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영어성적이 향상되었으며[19] 사업대상자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고[20] 사업 참여 학생들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하지만 이러한 효과와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사업과의 중복성이다. 방과후돌봄학교, 위프로젝트, 드림스타트, 행복키움사업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유사한 사업들의 출현이 학생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시간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2]. 또한 단위학교 내에서도 교육복지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특정학생에게 프로그램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생기며[23] 프로그램 중심 운영 체제에 의한 프로그램 중복과 양적 치중의 문제가 있다[24]. 둘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이다. 이는 학교의 패쇄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교육복지사들은 교원들 사이에서 비 교원으로서 높은 벽을 느끼며 사업파트너로서 교원의 비우호적 태도,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교원들로 인해 학교 내에서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만들고 있다[23]. 셋째, 단위학교 간 대외의 간 기관간의 연계 부족 문제이다. 단위학교 시행 사업들이 학교교육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거나 [22] 학교 및 관련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24].

### 3.2.2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드림스타트 사업은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등 외국에서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사업의 시행에 힘입어 민간에서 시작한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을 정부에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실시하였던 것이 지금의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법적근거(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였다[25].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지와 교육, 건강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26].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기관(드림스타트)을 설치 운영하며 2015년 현재 전국 229개소를 운영 중이다.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 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사업총괄을 맡고, 시·도에서 사업지역의 드림스타트 팀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중심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일반적 운영을 지원한다[27].

드림스타트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체계로 드림스타트센터의 전담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 및 사정을 실시하고 대상아동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로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입산부의 산전후관리와 부모교육 등 아동의 환경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실시한다[27].

Table 2. Organization and Role of Dream Start [28]

division	professional	The main work	Common work
Team Leader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Health (nursing)	operating Budget Management - Investigation of children in vulnerable classes, Planning and coordination - Community Resources Excavating - 'haengbog e eum' admission - Member Management - After-school care services arrangement	Integrated case management / Child abuse reporting duty
Health officer	Health (nursing)	- Visiting health service support - Establishment of health network - Medical intervention - Emergency Assistance Service	
Welfare officer	Welfare	- Emotional development program 및 Sociability program development - connection Volunteer	
Child care (education) person	Child care (education)	- Child Care Program - Early Education Program - Home visit	

취약계층 아동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2017년에는 대상지역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예정이다[28].

드림스타트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이 되어왔다. 2007년 16개 지역에 처음 설치된 이후 2015년 전국 229개 지

역으로 확대되었으며 50억 원에 불과했던 국비지원액이 668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6년 현재 13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사례관리를 제공받고 있다[29].

2017년 도입 10년째를 맞는 드림스타트는 그동안의 성장과 성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안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드림스타트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구조 문제이다.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사는 대부분 비정규직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례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 서비스 질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9-31]. 또한 조직인력의 전문성 문제인데 드림스타트에서는 담당공무원(팀장)의 잦은 배치변경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책임감 결여, 소통의 부재를 야기할 수 있다[29,31,32].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의 확대는 통합사례관리 지원 아동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역시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재정지원과 인력확충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33].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평균 100여명으로 사례관리 이외에 기본프로그램과 기타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질 높은 사례관리가 어렵다[30,32].

둘째, 관련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의 문제이다. 민간기관(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워 서비스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30]. 드림스타트 아동 중 절반이상은 학습지원, 건강검진, 정서영역 등 3개 영역의 복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31].

셋째, 재원의 규모와 형태이다. 드림스타트는 통합사례관리 아동 기준으로 1인당 투자액이 77만원으로 영국의 슈어스타트의 300만원, 미국의 헤드스타트의 788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33].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300명 이상 센터 1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고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후원자 개발이 용이하지 않아 추가적인 아동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30].

### 3.2.3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1995년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방과후활동을 도입한 이후 교육활동 취지가 퇴색되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이후 2004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기 위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방과후활동에 특기적성교육 이외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과 초등 저학년 보육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2006년 시범학교 운영이후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34,35].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과후학교사업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 4가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지역 대학생을 연결하여 학습, 문화체험 등의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자유롭게 방과후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수강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셋째, 농산어촌지원사업으로 농산어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교육자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다. 넷째, 초등돌봄교실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 맞벌이 가정자녀에게 방과후에 보육과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 돌봄사업이다[36].

2013년 기준 전국 초중고의 99.9%에 이르러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교과 및 특기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부가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김수동[38]은 방과후학교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다룬 연구에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파악했다. 첫째, 교원의 업무부담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강사 구인, 급여, 만족도 조사 등 업무가 가중되면서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수급의 문제로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91.6%수준으로 교원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정규교육과정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저렴한 수강료정책으로 저렴한 수강료가 반드시 참여율과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불안한 방과후학교 강사처우와 민간위탁 문제이다. 민간업체의 영리화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자유수강권사업에 있어 자유수강권 제도가 참여가 불성실한 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으로부터 수강권을 박탈하여 수강권을 책무성과 연결함으로써 교육기회의 접근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거나[39] 자유수강권 수강신청 저조 및 포기, 대상자 변동등의 사유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사업들과의 유사,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40].

## 4. 발전방안

이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바, 이에 그 문제점들을 토대로 현재의 교육복지서비스가 보다 본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 한다.

### 4.1 통합시스템 구축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실행하는 추진체계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역의 교육복지 대상자는 각 사업의 복지 대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단위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사업들과 중복지원이 생기기도 하고 각 사업별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Wee프로젝트 등에서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역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중첩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더불어 이러한 양상이



오히려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지원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영국은 아동학교가족부에서 모든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있고 사업과 정책별로 연계되어 있다[41]. 통합시스템의 구체적 방안으로 조금주[22]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부서를 설치하고 시·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복지 조직을 ‘과’ 또는 ‘팀’ 단위로 구성하는 방안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업무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중 1인을 연계와 협력을 핵심업무로 담당하게 하는 구조개편 방안[33]을 제시하였다.

#### 4.2 인력구조 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는 처음 몇 개의 시·도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세 가지 사업 모두 전국의 시도군, 또는 전국 단위학교별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책임자로 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민간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시스템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리더의 전문성 문제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6급 이상의 공무원이 센터의 팀장을 맡고 공무원 4인과 민간 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경우 2년 이상의 연속 근무를 권장함에도 현장에서 장기근속 근무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업무분장의 하나로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뿐 분기별 혹은 회계연도 별로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잦은 이동 업무배치로 인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통찰과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담당자간 소통을 어렵게 하며 업무에 혼란을 야기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인력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업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학교장이나 장학사,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사업 성패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 이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인력의 고용안정성 문제이다. 현재 교육복

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 계약직으로 신분안정성이 낮다. 고용불안정 하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의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적인 해결 능력으로 현실화가 어렵다. 이에 이상균[33]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사업을 총괄하면서 안정적으로 종사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칫 지역적 편차와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의 고용배치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3 연계와 협의를 통한 교육복지 인식 고양

민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기관 간의 소통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상자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분절적 사업 시행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교육복지 업무담당자들이 서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복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도는 중요한 문제이다[23]. 사업에 대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관점적인 충돌이나 학부모의 소극적인 협조는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현재 교육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국가 주도적이기 보다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간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이나 규정을 통해 기관 간의 업무협력과 협의, 정보공유를 의무화해야 한다.

#### 4.4 새로운 서비스 모형 개발

교육복지 서비스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교육복지 정책들에 대해 ‘개량’의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34].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추진과 성장으로 각 사업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어 대상자의 흥미를 떨어

뜨리고 일부는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그간의 백화점식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모델 개선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22]. 프로그램의 분야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성 문화행사나 내실이 없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때 단발성 벗어나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사업별로 차별성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헤드스타트와 영국의 슈어스타트를 모델로 한 드림스타트와 영국의 교육우선지역정책(EAZ)를 모델로 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제 추진전략에 있어 우리만의 고유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각 사업들이 서로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지원사업에서는 취학 후의 아동·청소년을 집중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드림스타트에서는 표적대상의 연령을 조금 더 낮추어 보건, 생활, 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통합사례관리형 서비스를, 방과후학교에서는 취학 직전부터 취학 이후의 아동·청소년 학습지원서비스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 한 사업 이상에서는 교육복지에 있어 의미 있는 학습의 기능의 역할을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복지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연구에 입각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학문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결론

우리나라는 1997년 소위 'IMF' 체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복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에 처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급증되었다. 저소득층 여성이 생계를 위해 사회활동을 해야 할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학교의 기능이 위축된데 반해 이러한 사교육 시장을 이용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학습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상승, 빈곤의 대물림 현상과 공교육의 위축 등 우리사회는 교육복지가 필요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특히 개인적·경제적 이유로 그러한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힘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자가 증가하고 급속하게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만 5세 이하 무상교육실시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3년 도시저소득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드림스타트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가 마련되고 각각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동안 꾸준히 규모 확장의 길을 걸어왔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더욱 본질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복지정책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처를 생성하여야 한다. 비슷한 대상자에 각자 다른 부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낭비되는 예산과 자원을 줄이고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인력구조의 개선이다. 각 부처의 교육복지 담당자들은 행정 관료조직의 구조상 장기근속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이러한 잦은 업무교체는 담당자의 책임감을 저하시키고 이는 교육복지에 대한 전문가적 마인드 함양을 저해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인력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장기근속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제 도입과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인력은 비정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성에 높은 벽을 느끼면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 전문인력의 불안정성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한 일인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

셋째, 연계와 협의의 중요성이다. 각 사업의 담당자들은 대상자와 서비스에 대한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서비스에 사각지대와 중복

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기관과 기관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와 단위학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업무협력과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지역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자원에 맞는 고유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서비스보다 수요자의 개별적인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가 보다 더 개발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1] H. Y. Lee, B. R. Ryu, K. A. Kim, K. H. Kim & M. H. Kim. (2011). Building integrated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1), 3*.
- [2] I. H. Gu & J. U. Kim. (2015). Grading gap in college entrance-Role of Household Income. *Social Welfare Policy, 42(15), 22-49*.
- [3] Y. I. Kim. (2012). Education and Welfare reform task to reach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9(4), 35-59*.
- [4] I. H. Kim. (2006). Task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liminating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Research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3), 289-314*.
- [5] Y. H. Kim. (2014).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 Focusing on legislation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Welfare. *Seoul Law Review, 21(3), 215-261*.
- [6] B. S. Hong. (2009). Analysis of Education-welfare Law Based on the Education-welfare Frame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7(1), 1-27*.
- [7] Y. H. Kim. (2012). Education and Welfare reform task to reach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9(4), 35-59*.
- [8] B. R. Ryu. (2010). A Direc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group with less educational opportun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1), 5-5*.
- [9] S. Y. Park. (2009). Education welfare and youth work in England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Future Oriental Youth Society, 6(4), 119-138*.
- [10] K. H. Noh. (2008). The Tendency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Law and Policy Studies, 8(2), 623-650*.
- [11] Y. J. Sin. (2002). A Study on the New Deal Programmes of New Deal Labour Government in the U. K.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Welfare. *A study of life sciences, 1(7), 169-179*.
- [12] K. H. Noh. (2007). The Tendency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in U.S.A. *Korea Institute of Public Construction & Technology, 35(3), 27-55*.
- [13] Y. C. Gook. (2010).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Education Welfare Policy in the U. S. after 1960s: Focusing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itle. *K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0(4), 203-226*.
- [14] J. ValentinI. (2005). The Implications of French 'ZEP' on the Policy of Investment Priority Area for Educational Welfare in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15(3), 239-262*.
- [15] Y. S. Jung. (2009). Suggest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educational welfare.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6(3), 31-52*.
- [16] B. R. Ryu. (2010).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1), 94-109*.
- [17] H. J. Shin. (2013). Exploring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legislatio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5(2), 81-107*.
- [18] The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Development Strategy for Support of Education and Welfare Projection Projects*. <http://www.moe.go.kr>.
- [19] H. N. Bae. (2015). *Longitudinal study about the effect of the supportive project for the priority region of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based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Ewha Womans University.
- [20] E. D. Kim. (2014). The Influence of the Priority of Education Welfare Program on the Empower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Asan-city. Suncheonhyang University.
- [21] C. M. Park. (2013).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ogang University.
- [22] G. J. Jo. (2014).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for restructuring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491-513.
- [23] K. S. Chung, M. R. Son & H. S. Yun. (2017). Issues of Educational Support for underprivileged Student in Korean Elementary School - from the Experience of School Social Worker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4), 87-112.
- [24] S. J. Lee.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licy of Priority-Zone Investment for Education Welfa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1141-1159.
- [25] D. H. Jang, S. K. Kim, K. W. Yoo & C. S. Yoon. (2015). *Education Welfare*. Seoul: Park Young Story.
- [26] K. J. Oh. (2013). A research about the improvements in collective service system for th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y backgrounds -Korean Dream Start Program as a central point. *Korean Balanced Development Studies*, 4(2), 63-89.
- [2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Dream start guidance*. <http://www.mohw.go.kr>.
- [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Dream start Project plan*. <http://www.mohw.go.kr>.
- [29] S. G. Lee.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115-150.
- [30] H. Y. Kim. (2012).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or Child Welfare. *local welfare policy*, 23(1), 51-64.
- [31] C. Y. Nam. (2015). A Study on Advocacy Process of Dream Start Progra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9(3), 389-422.
- [32] J. J. Ho. (2016). A Case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Reinforcement Method of Dream Start Cas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35), 339-358.
- [33] S. G. Lee.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115-150.
- [34] S. H. Kim. (2008).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for Lower Clas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3), 1-25.
- [35] H. S. Shin & K. H. Lee. (2010). A Critical Review on the Management Direction of School Policy after-Schoo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6(3), 225-250.
- [36] Jeon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6After-school prospectus, [www.jbe.go.kr](http://www.jbe.go.kr).
- [37] G. D. Park, J. J. Choi & E. S. Sim. (2016). Actual Conditions of After-school Program by Year and its Vitalization Plans.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3 (2), 359-377.
- [38] S. D. Kim, J. Y. Yoon & J. Y. Mo. (2017). 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Problem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After-Schoo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2), 855-864.
- [39] N. S. Yoon. (2013).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Method for Educational Publicness of After-School Voucher System. Inje University.
- [40] H. S. Kim. (2012).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 Management - Focus on Chun-Nam Provi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41] S. Y. Park. (2009). Education welfare and youth work in England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Future Oriental Youth Society*, 6(4), 119-138.

문 아 람(Moon, A Ram)

[정회원]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 교육복지, 청소년 복지
- E-Mail : nichki@naver.com

이 윤 환(Lee, Youn Hwan)

[정회원]



- 1982년 2월 : 충남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85년 2월 : 충남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1993년 3월 : 충남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인권, 정주 외국인 참정권
- E-Mail : lyh@konyang.ac.kr